

# 2019년 수도사업소 종합감사 결과보고

## I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9. 10. 14. ~ 10. 18. / 5일간
- 감사범위 : 2016. 11. 18. ~ 감사일 현재
- 감사인원 : 감사담당주사 등 4명

## II 주요 지적사항

### 1 예산회계분야

#### 1) 누수신고 포상금 지급 업무 소홀

총 ☆☆☆건 \*\*\*\*천원, 일반우편으로 상품권 교부

-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제43조(포상금 지급)에는 ‘창의적인 제안으로 상수도 행정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거나 지급대상 검토서 등 세부적인 지급절차 수립 없이 단순히 누수신고자에 대해 누수확인만 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상품권 수령자의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일반우편으로(000매, \*\*\*만원) 교부한 사실이 있음.
- 또한 상품권을 선구매하는 방식으로 잔량을 이월 시켰으며, 특히 2017년 배부잔량(00매)이 충분히 있음에도 2018년 예산 편성액 전액을 상품권을 선구매(000매)한 사실이 있음.

#### 2) 세출예산 집행기준 미준수

지출과목 부적정 ☆건, \*\*\*\*\*천원

-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지

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거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 제4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에 따르면 ‘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법규에 위배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상하수도 민원처리 차량 정비 등 ☆건, \*\*\*천원에 대해 지출과목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고, 가조정수장 ◆◆◆ ◆◆◆구입의 건은 기업출납원의 승인 없이 지출품의서를 담당자가 수기 수정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미준수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음.

### 3) 관외출장 여비집행기준 미준수

#### 교통비 등 \*\*\*천원 여비 과다 지급

-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 제3항에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는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 강북노후관로 정비공사 재원협의 참석 등 ☆☆건의 출장에 대해 자가용 동승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등 「공무원 여비집행 규정」을 위반하여 여비 \*\*\*\*\*원을 과다하게 집행하였음.

## 2] 건설분야

### 1) 상수원보호구역 수목제거사업 분할발주

#### 통합발주 노력 없이, 분할발주 수의계약

- 동일시기에 유사한 시설공사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분리 발주할 법적근거가 없는 한 물품·공사·용역의 성질이나 규모를 감안하여 추정가격에 따라 계약방법을 결정하고 발주하여야 함에도
- 「♣♣♣♣♣♣ ♣♣♣♣♣♣ ■■■■사업」 과 「□□□ ■■■ ♣♣♣♣♣♣ ■■■■사업」, 「▲▲▲▲▲▲ ▲▲▲▲ ■■■■사업」, 「▲▲▲▲▲▲ ▲▲▲▲ ○○○○○○ ■■■■사업」 등 4건의 사업은 사업위치가 인근에 있고 사업시기 및 예산과목이 동일하여 2건의 사업으로 통합발주가 가능함에도 각각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여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지 않고 분할발주하여 수의계약 체결한 사실이 있음.

## 2) 신기술 사용협약 미체결

### 계약 담당자 사전협의 및 신기술 사용 협약 없이 수의 계약 체결

- 발주부서는 공사시공에 보호기간 안에 있는 신기술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전에 해당 신기술등의 반영의 필요성과 유사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계약담당자와 사전협의 하도록 되어 있으나,
- 「◇◇면 ◆◆리 ▼▼▼▼ 정비사업」 등 2건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신기술을 포함하여 발주하면서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고 기술보유자와 신기술사용 협약을 하지 않아 관련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 3) 건설공사 설계검토 소홀 및 부적정

### 공사감독 소홀로 \*\*\*천원 과다 지급

- 건설공사가 설계도서와 시방서 등에 의하여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설계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현장 여건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시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합리적인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 「☯☯마을 △△△△설치공사」 등 ☆건의 공사에 대해 사토거리를 미정산하는 등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여 공사비 \*\*\*천원을 과다 지급하였음.

#### 4) 건설공사 산업안전관리비 정산업무 소홀

산업안전관리비 정산 소홀로 \*\*\*\*천원 과다 지급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없고, 수급인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되는 신호수 인부임 등을 감액 조정하여야 함에도 「□□리 ✕✕✕✕정비공사」 등 ☆건의 공사에 대해 감액을 하지 않고 산업안전관리비 \*\*\*\*천원을 과다 지급하였음.

### 3] 제세징, 물품분야

#### 1) 정수물품 구입절차 부적정

물품관리계획 반영 없이 정수물품 구입

-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음에도
- □□□□□(☆대, \*\*\*\*\*천원)를 구입하면서 물품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구입을 추진하였으며, 대체취득을 하였음에도 기존 물품을 불용처리하지 않아 정수책정수량을 초과하였음.

#### 2) 공사중 발생한 재고자산 처리 업무 소홀

## 공사중 발생한 재고자산 처리 절차 미준수

- 「거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에는 공사중 발생한 재고자산을 입고하고자 하는 경우 준공검사전까지 발생품 평가조서를 작성하고, 재용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불용물품을 일반입찰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하여야 함에도
- ~~◆◆취수장 ◆◆◆◆◆교체~~ 등 ☆건의 공사중 발생한 재고자산에 대해 발생품 평가조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 거창정수장 침전지 개선사업 등 ☆건의 공사 중 발생한 재고자산 (스테인리스 ####kg, 고철 ####kg)에 대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현장입찰하여 매각하는 등 발생품 처리 철자를 소홀히 하였음.

### 3)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관리 부적정

#### 장기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시 재산보유여부 등 미조회

- 「지방세징수법」의 체납절차에 따르면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재산을 압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 수도사업소에서는 2016. 11. 18.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체납자에 대한 압류재산 조회를 실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체납절차사항인 재산압류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총 ☆회에 걸쳐 장기체납 ☆☆☆☆건에 대한 결손처분을 실시하면서 체납자의 행방불명 또는 재산보유 여부를 조회하지 않는 등 체납액 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음.

### 4] 기타

#### 1) 단시간 근로자 산재보험 미가입

#### ☆건의 단시간 근로자 사역 시 산재보험 미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그 사업이 시작되어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신고를 하고 그 달의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나,
- ○○○○○○ 및 ○○○○○○작업 등 ☆건의 사업추진을 위해 단시간 근로자를 사역하면서 안전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2) 상수도시설 보안관리 미흡

### ◆◆ 등 보안시설에 대한 무인경비시스템 미사용

- 「거창군 공무원 당직과 비상 근무규칙」에 따르면 당직근무자는 청사 내외의 보안상태를 순찰과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당직보완 장비의 작동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관내 ◆◆ 및 ○○○○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짧게는 13개월(○○○○), 길게는 35개월(●●○○) 한차례도 작동시키지 않아 보안시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